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 작성 요건 강화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06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정의 신설	3
2.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추가	9
3.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 작성 관련 추가 사항	14
4. 채무자의 공증 촉탁 대리인을 법정대리인 등으로 제한	23
5.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집행문 부여시 법원의 심사 절차 추가	28
6. 공증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추가	3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 2.
3. 회 부 일 : 2025. 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기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즉시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집행권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짐.

하지만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이러한 강력한 집행력에도 불구하고 작성과 이후 강제집행에 있어 실제 거래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불법사채업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절박한 채무자를 압박하고 공정증서상 채권액을 부풀리거나, 전부 혹은 상당액을 변제받았음에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 전액을 청구하거나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피해자인 채무자로서는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하며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사채업자의 의도적인 현금 대출로 실제 대출금과 공정증서상 채권액의 차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는 공정증서상 채권액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공증과정에서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함에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에 관해 공정증서 작성 시와 강제집행 시 실제 거래 내역이 반영되고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 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공증인이 확인하도록 하고, 공증과정을 녹음하게 하며, 공증 이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 시 그 변제금이 강제집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지하게 하고, 채무자의 공증 촉탁 대리인을 채무자 본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제한하며, 집행문 부여 시 판사가 채무자의 변제 등이 반영된 현존 채무액과 공정증서 상 채권액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13조, 제25조, 제27조의2, 제30조의2,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56조의5, 제56조의6, 제88조).

Ⅲ. 검토의견

1.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정의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안 제1조의2는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를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의 공정증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발행한 어음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 정의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1조의2(용어의 뜻)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란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의 공정증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발행한 어음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말한다.</u>

나. 검토의견

1)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 채무자와 채권자가 금전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채무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음.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집행증서)로서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를 말함.
- 「민사집행법」(이하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제4호는 그 밖의 집행권원으로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집행증서

- 현행 「공증인법」(이하 “공증인법”) 상 ‘집행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 등 공정증서), 제56조의3(부

동산 인도 등 공정증서),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금전이나 대체물 지급 등 공정증서)¹⁾에 의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을 말함.²⁾

□ 안 제1조의2는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를 ①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의 공정증서와 ②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발행한 어음

1)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2)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2조

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 정의하고 있음.

- 현행 공증인법은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과는 별도로 어음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절차와 형식을 제56조의2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라는 정의를 신설하여 어음공정증서와 그 밖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구별하지 않음.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공증인의무, 촉탁대리인 제한, 집행문 부여시 법원의 채권액 실질심사 등을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행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제2항³⁾은 공증사무소에서는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을 법무부령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규칙에 따른 서식25 및 서식25의2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양식을 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양식 중 제9조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의 채무자 등의 강제집행의 인낙과 관련하여 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첨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는 반면,

3)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②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어음공정증서(집행증서)의 경우 같은 규칙 서식24 및 서식24의2에 별도로 서식을 두고 있고 부착된 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작성 형식을 달리하고 있음.

-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특별한 형식이나 추가적인 행위 없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청약과 승낙)가 합치되면 계약이 완성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는데 반해4),

어음 기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어음법」에서 정한 요건5)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약속어음 작성이라는 서면행위와 거래 상대방에게 어음을 넘기는 교부계약을 통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함.

- 한편, 약속어음은 어음소지인에 대한 지급보장 및 유통성 보장을 위해 어음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일시불 변제가 원칙이며, 이자 및 지연이자가 없는 차용이라는 점에서 집행증서상 채권액을 부풀리거나 전부 혹은 상당액을 변제받았음에도 집행증서에 기재된 채권액 전액을 청구하거나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에 대한 우려

4)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어음법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 적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현행법상 별개의 집행증서로 작성 방법 등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두 종류의 공정증서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실무상 혼란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신설하는 ‘집행증서’의 개념 정의가 불분명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 관련 공정증서 중 어느 유형·범위까지 포섭·적용될지에 관해 실무상 혼란의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안 제13조제9호는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 8. (생략) <u><신설></u>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u> <u>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u> <u>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2조⁶⁾는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⁷⁾에 재직했던

6) 공증인법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7)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13조는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자유형이나 자격상실·정지, 제명 등 명예형, 징계 등에 의한 파면, 해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제9호는 여기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있음.

□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확정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유사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공증인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증인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또한, 형법상 형벌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할 때⁸⁾ 개정안과 같이 벌금형과 관련한 결격사유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가벼운 벌에 대한 결격사유 기간을 더 길게 규정하게 되어 형벌체계 상 조화롭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공증인법 제2조⁹⁾는 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8) <주요 형벌의 비교>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9)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데,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하며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¹⁰⁾은 횡령과 배임,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벌금형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도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자’를 결격사유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유사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관한 결격사유보다 과한 제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3.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 작성 관련 추가 사항

가.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추가

1) 주요 내용

- 안 제25조는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 작성 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등이 없는 경우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27조의2 및 제40조제1항제4호는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연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 3. (생략) <u><신설></u>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 -----. 1. ~ 3. (현행과 같음) <u>4.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경우,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0조(부속 서류의 연결)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결(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결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4. (생략) ② (생략)	<u>제27조의2(채무액의 확인)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증인은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촉탁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u> 제40조(부속 서류의 연결)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경우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 작성 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등이 없는 경우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현행 공증인법 제25조¹¹⁾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를 ①법령을 위반한 사항, ②무효인 법률행위, ③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불법사채업자의 압박 등으로 금전소비대차 집행증서 작성 시 채무액 및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의 진실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¹²⁾을 감안하여 공증인이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채무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상정할 수 있고, 제출받은 증명자료만으로는 금전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상의 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

11) 「공증인법」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2) 이코노믹 리뷰, [사람 죽이는 공정증서] 법조인 '모두의 무책임'속 피해자 속출, 2017.6.13. 14:22,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13>

계가 있으며,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낙성계약에 해당하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여금의 선입금을 요하는 것은 일반 민사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집행증서는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당사자가 채무의 존재 및 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것을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공증제도는 의사표시의 공적확인을 위한 것으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계좌내역이 없는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증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더욱이 대부업자의 압박 등이 없는 사인 간의 소비대차의 경우 및 모든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계좌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현행법상 공증인의 의무는 당사자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 사실 및 그 대상 금액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현행 공증제도 상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반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집행증서 작성시에도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적 의사 합치’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에도 채권액 증명자료 제출이 강제시 됨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의사 합치에 반하고, 채무자에게 절차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증인이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은 의사표시의 공적 확인이라는 공증행위의 본질이나 이를 전제로 한 공증인의 형식적 심사권한과 배치되며, 집행증서에는 기관력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이의 등을 통해 제한 없이 이를 다룰 수 있는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소비대차 집행증서 작성절차 등 추가

1) 주요 내용

- 안 제38조제6항 및 제7항은 공증인이 소비대차 집행증서 작성 시 공증 이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할 경우 그 변제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채무자 등에게

고지하고 공증과정을 녹음하여야 하며, 안 제35조제11호는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사실과 고지한 사실 및 녹음 사실을 공 정증서에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 10. (생략) <u><신설></u>	제35조(기재사항)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실</u> <u>가.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축약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사실</u> <u>나.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제38조제6항의 고지를 한 사실</u> <u>다. 제38조제7항에 따른 녹음을 한 사실</u>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① ~ ⑤ (생략)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 이는 공정증서 작성과정 및 이후 강제집행에서 실제 거래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불법사채업자들이 이를 이용¹³⁾하여 채무자를 압박하고 공정증서상 채권액을 부풀리거나, 전부 혹은 상당액을 변제 받았음에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 전액을 청구하거나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이 불법사채업자의 압박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분쟁이 없는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등 모든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집행증서 작성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공증인에게 녹음 파일의 보관 등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현행법 제35조의2는 공정증서 작성 이후라도 당사자들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문 부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¹⁴⁾.

13) 이코노믹 리뷰, [사람 죽이는 공정증서] 4백만원 빌려주고 "8천만원 갚아라" 사채업자의 강요, 2017.10.19. 15:08,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691>

14) **공증인법 제35조의2(부기)**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부기제도나 민사집행법¹⁵⁾ 상 채무의 존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제도 등 현행 제도를 통해서도 공증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채무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증 전 과정을 예외 없이 녹음하는 것은 채무자의 이익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5)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4. 채무자의 공증 촉탁 대리인을 법정대리인 등으로 제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안 제30조의2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이외의 자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할 수 없도록 하고, 공증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이 이에 해당하는 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0조의2(공정증서의 대리 촉탁 제한) ①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이외의 자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할 수 없다.</u> <u>② 공증인은 채무자의 대리인 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이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 공증인법 제31조¹⁶⁾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리권이 증명되는 경우 대리 촉탁을 인정함.

이에 따라 대부업자도 대출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할 수 있고, 공증인이 집행증서를 작성하면 이에 근거하여 대부업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집행증서의 성립 여부가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집행증서의 성립에 있어 채무자의 집행수락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공정증서의 촉탁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제한하고, 공증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대

16) 공증인법 제31조(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리촉탁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대부업자와 채무자 간 대부계약 체결시,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를 포함하여 대출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임.¹⁷⁾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집행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집행수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해하고 위임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함.

○ 또한 집행증서 작성에 있어서도 대부업자 등이 집행증서의 작성을 일괄적으로 촉탁하는 것이 현실이고, 공증인이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형식화되어 있으며, 비대면공증, 서명대리와 같은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¹⁸⁾.

□ 다만, 민법상¹⁹⁾ 임의대리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리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쌍방대리도 가능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리인을 친족 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대리인으로 선임할 친족 등이 없거나 분쟁이 없는 금전

17) 법무부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이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임장에 ‘대부업자 등이 내세운 직원 또는 대출 브로커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에 의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을 요구한다는 것임.

18) 법률신문, ‘부실 공증’ 법무법인·변호사 등 31명 무더기 징계 2018-05-08 14:27, <https://www.lawtimes.co.kr/news/142733?serial=142733>

19)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소비대차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대리권 제한이 채무자 보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공증인법의 관련 규정상 채무자 본인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대리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경우 해당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사전에 방지할 기회가 있다는 점²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법무부는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2013.10.1. 시행)을 통하여 ‘대부업자 등’이 금전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쌍방대리 형태의 촉탁행위를 할 경우 공증인에게 촉탁을 거절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쌍방대리 형태의 촉탁행위에 대하여 ‘대부업자 등’의 금전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채무에 관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공증인에게 촉탁을 거절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²¹⁾

○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20)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①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증서의 건명·번호 및 작성연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공증인법」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21)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2055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²²⁾).

□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민법상 임의대리 원칙,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기계약·쌍방대리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인을 친족 등으로만 한정하는 조치가 채무자 보호 취지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채무자가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개정안과 같이 대리인을 제한하는 것이 대리촉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2) [211428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24-05-29 임기만료 폐기

5.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집행문 부여시 법원의 심사 절차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안 제56조의5 및 제56조의6은 공증인이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집행문 부여 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고, 법원이 심사한 현존 채권액의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집행문에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56조의5(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집행문 부여)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채무자의 변제 등에 따른 현존 채권액과 집행증서 기재 채권액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

현행	개정안
<u><신설></u>	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56조의6(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집행 범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56조의5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집행증서 기재 채권액의 일부만이 현존 채권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집행문에 기재하도록 공증인에게 명하여야 하고 공증인은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생략)	제56조의7(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현행 제56조의5와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6조의4²³⁾는 일반적인 집행문 부여 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23) 공증인법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제35조의2(부기)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②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의 부기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다만,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의 작성에 있어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집행증서) 작성과는 다르게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제56조의3제4항²⁴⁾).

○ 현행법 제56조의3은 공증인법[법률 제11823호, 2013. 5. 28, 일부개정]을 통하여 공정증서(집행증서)의 대상을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까지로 확대하면서 장기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집행증서가 작성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임.

□ 한편, 현재도 실무상 현존 채권액의 존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관계를 심사하여야 하고, 개정안의 경우는 집행문 부여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불법사채업

24)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분쟁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법원의 집행문 부여 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법원 실무상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확정 판결 상 채권액의 사후적인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민사집행 절차에서 청구권의 부존재·소멸 등 실체상 사유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6. 공증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안 제88조는 공증인이 집행증서 작성시 ①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촉탁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②채무 변제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채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공증과정을 녹음하지 아니한 경우, ④집행문 부여 시 현존 채권액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⑤채무자의 대리인이 법정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제88조(벌칙)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u> -----. 1. <u>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그 사실을 적게 하지 아니한 경우</u>
<u><신 설></u>	<u>2.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촉탁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u>
<u><신 설></u>	<u>3.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제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u>
<u><신 설></u>	<u>4.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증과정을 녹음하지 아니한 경우</u>
<u><신 설></u>	<u>5. 제56조의6을 위반하여 집행문 부여 시 현존 채권액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u>
<u><신 설></u>	<u>6.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제3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u>

나. 검토의견

- 안 제88조는 개정안에서 공증인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에 따른 각각의 의무 사항 중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경우는 공증인이 법인의 사록의 인증 방법 및 그 절차를 규정한 제66조의2제2항²⁵⁾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법무부에 따르면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징계처분으로서 과태료 처분²⁶⁾을 하고 있다고 함.

25)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6) **공증인법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2. 1년 이하의 정직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 또한, 현행법은 벌금형에 대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안 제13조제9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공증인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외에 감독기관에 의한 징계, 과태료 처분 등으로도 입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59